



대구대학교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
업 무 협 약 서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함)가 민주시민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호간 깊이 인식하여 정치·선거문화 발전을 위한 유익하고 장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범위)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의거 적극 협력하며, 사업추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양 기관은 새내기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문화 습득을 위한 민주시민정치교육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.
2. 양 기관은 공동 개최하는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,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자원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3. 양 기관은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·운영한다.

4. 양 기관은 기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공동 추진한다.

제3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양 기관의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2011. 12. 5

대 구 대 학 교 경 산 시 선 거 관 리 위 원 회

총 장 홍 덕 를 김덕진 사무국장 김 준 규 김준규